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IMIN (4646)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Tel: (949) 551-IMIN (4646)

Las Vegas Office:

6480 W. Spring Mountain Road. Suite 6
Las Vegas, NV 89146
Tel: (702) 362-IMIN (4646)
E-mail: imin@iminusa.net
Website: www.iminusa.net

Newsletter DECEMBER 2020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국무부가 매달 영주권 신청자의 숫자를 계산하여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서류접수가 가능한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은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은 가족과 취업 영주권 발행을 결정함에 있어 한 국가의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지 않도록 각 국가별로 동일하게 7%의 영주권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비교적 많은 나라는 신청숫자가 전체 미국 이민자의 7%가 넘는 경우가 생겼고, 특정 몇 나라들 (중국, 인도 등)은 각각 별도의 영주권 문호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인도출신 이민자는 약 10년 이상, 중국인 국적자는 약 5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데에 비해, 별도 취급을 받지 않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적의 이민자는 대기기간이 없어 약 2년안에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별 7%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하원은 2019년 7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가별 쿼터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상원은 만장일치로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서명한 후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 상원에서 나온 수정법안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취업이민 쿼터 상한제 철폐 규정

- 새로운 법안이 시작되고 9년동안은 일정한 퍼센트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신청자들에게 보류됩니다.
 - 1st year: 30% reserved
 - 2nd year: 25% reserved
 - 3rd year: 20% reserved
 - 4th year: 15% reserved
 - 5th & 6th years: 10% reserved

- 7th, 8th, & 9th years: 5% reserved

2. 가족이민 쿼터 상한/확대

- 현재 7% 씩 주어진 국가별 쿼터가 15% 로 확장됩니다.

국가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문호를 적용한다면, 한국출신의 취업 이민자들은 현재 2년 정도인 영주권 심사기간이 적어도 5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이민공약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같이 취업이민 쿼터 자체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도 있으니 한국 이민자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imin@imiusa.net)이나 전화 (213-385-4646) 주십시오.

감사합니다.